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 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
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‘청소년 증’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」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. ~ 9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

1.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경우에는 TOP /TWP와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50점 이상, 2018. 5. 12. 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700점 이상, 2018. 5. 12. 이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385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다.
2.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승격후보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조(「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의 개정)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2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어학검정시험의 종류,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

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별표 4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
외국어능력검정의 종류,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
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「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
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제1호 중 “여권”을 “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”으로 하고, 같
은 항 제2호 중 “아동(유아를 포함한다) 및 초·중·고등학생”을 “아
동(유아를 포함한다), 초·중·고등학생 및 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)”
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의3서식 유의사항란 중 “아동(유아 포함) 및 초·중·고등
학생”을 “아동(유아를 포함합니다), 초·중·고등학생 및 청소년(학교
밖 청소년을 포함합니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
칙」의 개정)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
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학생증·주민등록증”을 각각 “학생증
· 청소년증·주민등록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」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「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① 「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.

② 「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 4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추천하는 영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부터 적용한다.

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출항·입항의 기록·관리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유·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<u>여권</u>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.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<u>아동</u> (유아를 포함한다) 및 초·중· <u>고등학생</u>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. (생략)	제20조(출항·입항의 기록·관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</u> ----- 2. ----- <u>아동</u> (유아를 포함한다), 초·중· <u>고등학생</u> 및 <u>청소년(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 3. (현행과 같음)

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) ①·② (생략)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. 1.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<u>학생증·주민등록증</u>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.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<u>학생증·주민등록증</u>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. (생략) ④ (생략)	제8조(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학생증·청소년증·주민등록증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학생증·청소년증·주민등록증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